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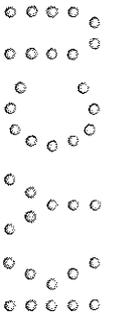
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회의통보일자	2020년 3월 4일
위원정수	재적인원 9명

1. 일 시 : 2020. 3. 9.(월) 15:00
2. 장 소 :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
3. 참석의원

구 분	인원	성 명
참석	5	이재영, 국호, 방용환, 김재형, 박영아
불참	4	원정미, 이재옥, 이미옥(이설아), 이환희

4. 안 건 : 학칙 제53조(등록금의 반환) 규정 조정



5. 회의내용

위 원 장 :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9명 중 4명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재적 위원 5명의 참석으로 성원 되었음을 간사로부터 확인한 후 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.

고등교육법 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,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,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학의 2020학년도 1학기 시간제 입학 학생 자퇴 시 등록금 환불 규정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다.

우선 <안건> 학칙 제53조(등록금 반환)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가 설명해 줄 것을 말하다.

간 사 : ‘코로나 19’의 재난 단계 최고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확산 우려로 인해 현장실습 기관의 운영 취소로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며, 이와 같은 현장실습 불가능에 따른 등록 포기 대응 방안으로 자퇴 시 한시적인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(안)을 설명하다.

위 원 장 : <안건>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말하다.

김재형 위원 : 입학포기자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기관에서 취소하는 경우와 ‘코로나19’와 상관없이 포기하는 학생의 경우를 구분할 것인지 묻다.

위 원 장 : 본 질문에 관해서는 교학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, 현재 실습이 진행 중인 기관이 있는지 설명해 줄 것을 말하다.

현장실습 담당자 : 실습 진행 중인 기관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, 많은 기관이 기간을 잠정적 연장 중이라고 설명하다.

김재형 위원 : ‘코로나 19’가 진정되지 않을 시 추후 진행(안)에 대해 묻다.

위 원 장 : 1학기에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학적 유지 후 다음 현장실습기간에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.

김재형 위원 : 학적 유지란 등록금을 사용했다는 조건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교학처와 협의 사항임을 설명하다.

국 호 위원 : 규정 상 등록금 반환 기준은 유지하며, 단서조항으로 '국가재난상태 기간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.'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다.

(참석위원 전원 동의하다.)

위 원 장 : 학칙 제53조(등록금 반환)에 단서조항 명시할 것으로 의결하다.
원안 가결을 선포하다.

2020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사실이 원안과 같음을 확인함.

2020. 3. 10.

위 원 장	이 재 영	위 원	국 호
위 원	방 용 환	위 원	김 재 형
위 원	원 정 미	위 원	이 재 욱
위 원	이 환 희	위 원	이 설 아
위 원	박 영 아		